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채현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91

발의연월일: 2024. 8. 1.

발 의 자:채현일・이기헌・조계원

조인철 · 오세희 · 서영교

주철현 • 박해철 • 박민규

허성무 • 박용갑 • 정진욱

허 영·임미애·황정아

김 현 • 이광희 • 복기왕

문금주 · 양부남 · 박홍배

김문수 · 정성호 · 이병진

전진숙 · 박범계 · 김영환

정준호 • 박정현 의원

(29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.

그런데 지난해 새올 등 행정시스템이 마비되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제한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, 현대사회는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이를 사회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3조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호나목 중 "다중운집인파사고"를 "다중운집인파사고·정보통 신망침해사고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ㆍ신	1
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	
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	
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사회재난: 화재・붕괴・	나
폭발 • 교통사고(항공사고	
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	
· 화생방사고 · 환경오염사	
고· <u>다중운집인파사고</u> 등	<u>다중운집인파사고·정</u>
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	보통신망침해사고
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	
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	
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	
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	
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	
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	
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	
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	
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	
먼지, 「우주개발 진흥	

법」에 따른 인공우주물체	
의 추락・충돌 등으로 인	
한 피해	
2. ~ 13. (생 략)	2. ~ 13. (현행과 같음)